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과 ‘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’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함(안 제12조의3, 안 제12조의4, 안 제12조의5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